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BK21 4단계 빅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정책 분석 교육연구팀 자체 운영 규정

제정 2020. 10. 15

개정 2023. 03. 03

제 1 장 총칙

제1조(사업팀 목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정책 분석 교육연구팀은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목적) 본 규정은 BK21 4단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정책 분석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BK21 4단계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기간)

-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차 연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직 및 기능)

- ①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대상자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소속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다.
- ② 교육연구팀의 구성원은 1항에 의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교육연구팀에서 임용한 신진연구인력 및 담당 사무원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의사결정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교육연구팀장) 교육연구팀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①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배분할 권한
- ② 사업팀 참여교수의 진, 출입 관리, 신입교수 총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및 전담 사무원 채용
- ③ 교육 연구팀 예산 운영 및 조정
- ④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

제7조(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 주임교수, 2-3인의 BK21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제 3 장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

제8조(참여교수 선정)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 ①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전일제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소속은 본 대학의 경제금융대학이어야 한다.
- ② BK21 참여교수 자격 조건을 충족(BK21 사업공고 상의 참여교수 자격 요건)하며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참여교수는 교수의 퇴임, 연구년, 해외출장, 이직 등의 향후 일정과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참여대학원생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단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경우 교육연구팀장이 해당 교원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 ④ 참여교수 수는 9명(사업 계획서 제출 기준) 이상을 유지하며, 각 참여교수는 참여대학원생을 최소 1명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단, 경제금융대학에 부임한 지 2년 미만의 교수가 참여교수로 최초 참여하는 경우는 참여대학원생 지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참여교수 교체 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의 자체평가 결과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① 사업팀 운영규정 제8조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②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③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참여교수 교체시 BK21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한다.

제10조(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참여교수 평가항목은 교육실적, 연구영역, 행정, 대외 활동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아래 기술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평가 항목 및 배점(총점 100점)은 아래와 같다.
 - 1. 교육 실적 30점: 참여학생 지도실적, 대학원 교과목 개발 실적, 대학원 종합시험 출제 및 채점 실적, 특강 실적 등으로, 이 중에서 참여학생 지도실적은 최근 1년간 실적을 졸업생수, 지도 학기수(=참여대학원생 * 지도학기), 지도학생의 논문 및 학술대회 실

- 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연구 영역 30점: 논문의 우수성. 최근 3년간 논문 중 대표실적 2건에 대한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3. 행정 영역 30점: 행정 기여(사업 운영,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등 20), 사업팀장 평가(10)
 4. 대외 활동 10점: 국제 학회 활동 및 수상(5), 기타 활동(5)
- ② 책정된 성과급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③ 참여 교수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인센티브 지급은 2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참여 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제11조(참여대학원생)

-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 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대학원생을 말한다. ※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④ 구체적인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표 1]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 중 부적격 및 비 전일제 학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인원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한다.

[표 1]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고
1) 소속	■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 사업기간 중 휴학생 및 제적생은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2) 연한	■ 입학후 석사 2년 이내 ■ 입학후 박사 4년 이내 ■ 석·박사통합과정 6년 이내	
3) 전일제	■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 사업팀장 승인 시 학기당 6학점 이내의 시간강사 가능

제12조(연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의미한다.
- 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되며, 장학금 지원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상실 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정산하여 환수된다.
- ③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 석사 13명 내외, 박사 2명 내외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④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평가기준 [표 2]에 근거하여 매 학기 이루어지며, 선정 평가를 위해 후보 대학원생은 연구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 1학기 및 박사 1학기 지원자는 학부 및 석사 성적을 기준으로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선정한다. 단, 지원 기간 중에 연구실적이 예상되는 대학원생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표 2] BK21 참여대학원생 선정의 요건 및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학점 및 이수교과목	학부 성적과 이수교과목 직전 대학원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학원 IC-PBL 과목 수강에 가점을 줄 수 있음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학부 성적 대학원 2기 이후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단, 직전 학기 학점이 없는 경우 전전 학기 성적.
논문실적	1) 국제저명학술지	한 편당 40점
	2) 등재/등재후보	한 편당 20점
	2) 기타	한 편당 10점
학술발표 (최대 100점)	국제 학술대회	40점
	기타 학술대회	20점
	사업팀 내부 발표	5점
교육실적	학부과목 섹션을 담당할 경우 과목당 50점	최근 1년
	학부 또는 대학원생 대상 특강을 담당할 경우 10~50점	
연구계획서	50점 만점으로 평가	-
사업 참여도	1) IC-PBL 과목 조교, 오픈아카이브사업 참여 건당 10-20점	직전학기
	1) 세미나, 특강 등 참여 건당 2-3점(운영위원회에서 건당 점수 결정) 2) 학술행사 진행 보조 등의 업무에 대해서 5-15점 가산점 부여(단, 한 학기에 최대 15점)	

제13조 (참여대학원생 휴가 및 방학) 참여 대학원생은 방학 중에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휴가 및 방학 기간을 가질 수 있다. 15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교육연구팀에 보고를 한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체류 시 해외체류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은 불가한다.

제14조 (연구장학금 월지급액등)

- ①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인상)
 - 석사과정 : 월 100만원
 - 박사수료 : 월 130만원
 - 박사과정 : 월 160만원
- ② 연구장학금의 월지급액을 차등 지급 할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15조 (참여대학원생 지원)

- ① 사용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논문 실적, 학술대회 발표 등의 성과에 따른 지원금 지원할 수 있다. 금액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제16조 (신진연구인력 선발)

- ① 계약교수 또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채용 시 본교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 계약교수 : 「한양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 박사후연구원 : 「한양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 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 간의 연구, 교육 실적을 본교 교원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한다. ③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 ③ 박사후연구원은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외부에서 선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에서 연구 및 교육에 전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팀장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이내의 강의 및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신진연구인력의 선발은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신진연구인력 평가기준 [표 3]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차 선발한 후, 사업팀장의 최종 면접평가로 선발한다.

[표 3] 신진연구인력 평가 기준

항목별 평점									총점
연구능력(20점)			교육능력(20점)			행정능력(10점)			
우수 (20~16)	보통 (15~10)	미흡 (9~1)	우수 (20~16)	보통 (15~10)	미흡 (9~1)	우수 (10~8)	보통 (7~5)	미흡 (4~1)	

제17조 (계약기간) 1회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4년까지 계약 할 수 있다.

제18조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①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최저 월 총 3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월 277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월 300만원에 대한 차액(월 23만원)은 퇴직금(12개월 이상 연속근무) 재원으로 할당한다.

제19조 (신진연구인력 운영 및 지원)

- ①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장 및 학과 승인을 거쳐 교내 및 연구재단 규정 범위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은 논문 투고 및 게재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국제화경비 및 사업팀 운영비 집행

제20조 (국제화경비)

- ① 국제화경비는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편성 예산 금액에 따라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 ②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은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단,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이다. 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연구팀장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제화경비 지원범위는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항공료 및 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본교 규정에 따르며, 지원은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며 금액도 1인당 연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④ 국제학술회의 참가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발표자, 지정 토론자 및 [표 2]에 따른 참여 대학원생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한다.
 -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 2. [표 2]에 따른 참여대학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대학원생
 - 3.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4. 신진연구인력
 - 5.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 가능
- ⑤ 학회 참가 전 [국제학회 참가 경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국제학회 참가 결과 보고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21조 (장기해외연수)

- ①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 연수 활동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단,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 기간 동안

연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② 장기연수지원대상은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사업팀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③ 해외연수 지원자는 사업팀이 지정하는 서류(연수계획서등)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지원 금액은 항공료 실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본교 규정에 의해 지급]

제22조 (해외석학초청)

- ① 당해 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팀에 신청하여 사업팀장이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② 초청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해외석학을 초청하며 초청된 해외학자는 사업팀 참여교수, 신진 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세미나/특강 등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 ③ 국제적인 저명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학자라면 사업팀장의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③ 지원 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 자문료(강연), 회의비등이며[본교 규정에 의해 지급],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팀운영비)

- ①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5천만원(1차년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 할 수 있고, 지원 항목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사업팀 소속 직원 인건비) 월급여 및 퇴직금을 지원하고, 4대 보험관련 경비는 교비로 집행하되,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다.
- ③ (참여교수 성과급)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고, 급여 성격의 성과급은 집행 할 수 없다.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 약 1개월 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

제24조 (기타) 기타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내규를 개정한다.

부 칙 (2020. 12.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